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95
----------	-------

발의연월일 : 2018. 4. 23.

발 의 자 : 金成泰 · 김영우 · 박성중
이만희 · 신보라 · 송희경
홍철호 · 원유철 · 강석진
정갑윤 · 성일종 · 최교일
이은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정보통신망 내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댓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가짜뉴스, 악성댓글에 이어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등 온라인 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댓글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또한 인터넷언론과 대형포털이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환경 구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

설, 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특정 게시물 조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시물(이하 “특정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②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특정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 또는 이를 교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4조의11(특정 게시물 조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시물(이하 “특정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특정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p>

제70조(벌칙)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다.

제7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 또는 이를 교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